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기한 도래에 따라 업계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해 그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기한 연장(안 제30조제3항)

○ 부과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'27.12.31.까지 부과 면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(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) ①·②(생략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.</u>	제30조(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2027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48